

윤리경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하이즈항공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고 한다)의 임직원(이 규정에서 「임직원」 이라 함은 회사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이 윤리적 기초 위에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윤리적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투명경영과 책임경영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윤리”란 행위의 옳고 그름과 선악을 구분하는 원칙이면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체계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2. “윤리경영”이라 함은 다음 사항이 적극 반영된 경영을 말한다.
 - 1) 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이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의하여 형성된 윤리적 기준을 자발적으로 지켜 나아가는 경영
 - 2) 회사 내의 모든 의사결정과 임직원들의 행동이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이 되기 위한 내부통제 실행 시스템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경영
 - 3) 비윤리적 행위나 위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단속체계가 구축된 경영
3. “윤리강령”이라 함은 회사의 공공성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구해야 할 가치와 지향목표로써 경영전반에 대한 기본정신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말한다.

제 3 조 【원 칙】

임직원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제 4 조 【적용범위 등】

1. 임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이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경영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관련 내규 등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윤리강령 등】

1. 회사는 윤리경영 규정 등을 사내 그룹웨어에 공지한다.
2.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규범을 정하고 그 세부 행동기준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직 및 교육

제 6 조 【조직 등】

1. 회사는 윤리경영 정책결정 및 관련 제반 규정 등을 제정하는 등 윤리경영 전반을 관장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윤리경영위원회의 업무처리를 보조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3. 전항의 윤리경영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은 윤리경영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윤리경영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 2) 윤리강령 제정 및 개정
- 3) 윤리경영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4) 윤리경영관련 제안 및 신고센터 운영
- 5) 위반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요구
- 6) 윤리경영 의문사항에 대한 상담, 자문 역할 수행
- 7) 기타 윤리경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 조 【교육훈련】

회사는 임직원이 윤리경영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관련 주요 법규와 준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내부통제 등

제 8 조 【내부통제】

회사는 임직원이 윤리경영관련 규정 등을 준수토록 하고, 위반 행위를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 9 조 【위반행위 등 신고 및 처리】

1. 임직원은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윤리경영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자, 위반행위 및 그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3. 윤리경영위원회는 신고 받은 내용을 조사·확인하여 처벌, 제도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위반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포상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점검 및 조사】

1. 윤리경영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위반되는 행위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점검 및 조사 할 수 있다.
2. 점검 및 조사 실시와 이에 대한 처분 등은 내부통제관련 제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평가】

1. 윤리경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사의 윤리경영체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윤리경영위원회는 임직원의 윤리경영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근무 평가에 반영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반자 조치】

1.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 인사규정 및 인사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임원(사장 및 이사진 포함)이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 4 장 윤리경영위원회

제13조 【역 할】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윤리경영 실행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윤리적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 결정과 평가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14조 【구 성】

1. 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장, 사내이사(전무, 상무, 이사), 경영지원실장, 준법감시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3. 위원장 유고 시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직 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윤리경영 정책 결정
2. 윤리강령에 따른 행동규범 및 행동기준 제정 및 개폐
3. 이 규정 시행과 관련한 세부규칙의 제정 및 개폐
4. 윤리경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 【회 의】

위원회는 반기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결의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인의 출석 등】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위원회 부의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19조 【간 사】

위원회의 간사는 준법감시인이 되며 위원회의 개최와 관련한 준비를 총괄하고 의사진행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20조 【의사록】

1. 위원회 의사록은 준법감시인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1조 【규칙 등 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윤리경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이 규정 및 윤리경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사항 등은 사내감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내규의 개정 에 따른 용어 변경, 단순한 조직 체계의 변경, 기타 체제 변경 이나 자구 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개정할 수 있다.

제 6 장 윤리강령

제23조 【윤리강령】

1. 직무와 관련된 제반 규정, 사규, 사훈,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특히 윤리강령과 내부통제기준을 성실히 준수한다.
2. 임직원 상호 간에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한다.
3.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4.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5.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지 않으며,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6.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 · 언어적 · 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7. 사내에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8.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또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24조 【윤리강령서약서의 징구】

위원회는 윤리경영의 정립 및 윤리적 기업문화 형성을 위해 연1회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강령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